

2022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전통예능분과 제5차 회의록

▣ 회의일시 : 2022. 12. 22.(목), 14:00

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
▣ 출석위원 : 김영운(위원장), 성기숙, 성애순, 정성숙
전경옥, 조남규, 최 현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종 목 지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○ 시·도지사 추천 접수(전년도)	○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
↓	
○ 관계전문가 검토(전년도)	○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-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
↓	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	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(매년 1월 31일까지)
↓	
○ 조사단 구성	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※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
↓	
○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	○ 전승가치(역사성, 예술성, 학술성, 대표성 등) 및 전승환경(사회문화적 가치, 지속가능성) 등 조사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- 종목만 지정 시 : 지정 예고 여부 검토 -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 시 : 인정 절차 진행 ※ 보유자(단체)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
↓	
○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
↓	
○ 종목 지정 관보 고시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	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(매년 1월 31일까지)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	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, 신청서 접수
↓	
○ 조사단 구성	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실시	○ 서면조사(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)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1단계 조사 결과 검토,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2단계) 실시	○ 현장조사(실연) 및 면담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2단계 조사 결과 검토,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
↓	
○ 보유자 인정조사(3단계) 실시	○ 심층 기량조사(실연)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3단계 조사 결과 검토,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
↓	
○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
↓	
○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	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-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- 인정서 교부, 전승지원금 지급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1	국가무형문화재 ‘통영오광대’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	공개
2	국가무형문화재 ‘강강술래’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	공개
3	국가무형문화재 ‘남도들노래’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	공개

【검토사항】

1	국가무형문화재 ‘경기민요’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결과 검토	비공개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【보고사항】

1	국가무형문화재 ‘대금산조’ 보유자 인정조사 관련 소위원회 결과 보고	비공개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심 의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‘통영오광대’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

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‘통영오광대’ 전승교육사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
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국가무형문화재 ‘통영오광대’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22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전승교육사 인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국가무형문화재 ‘통영오광대’
- 지 정 일 : 1964.12.28.
- 주요 전승자 현황
 - 보유자(1명) : 김홍중(‘49년생, 남, 벼꾸·문둥탈, ’12.2.2. 인정)
 - 전승교육사(4명) : 장경진(‘51년생, 남, 말뚝이, ’92.9.1. 인정)
박기수(‘60년생, 남, 영노·양반, ’00.7.22. 인정)
하영진(‘56년생, 남, 할미, ’11.12.21. 인정)
이강용(‘66년생, 남, 문둥탈, ’11.12.1. 인정)

2) 추진경과

- 2022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(‘22.1.25.)
-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추천 요청(‘22.4월, 우리청→보존회)
 -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자 4명 추천(‘22.6월, 보존회→우리청)
 -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1명 불참 사유서(개인 사정) 제출(‘22.9.월, 보존회→우리청)
- 조사지표 검토 등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(‘22.7.20.)
-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실시(‘22.9.30.)

3) 조사개요

- 일 시 : 2022.9.30.(금), 10:00

- 장 소 : 통영예능전수교육관
- 조 사 자 : 관계전문가 4명
- 조사대상자 : 보존회 추천 이수자 3명
- 조사내용 :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의 조사지표(단체종목)에 따른 전승능력, 전승환경, 전수활동 기여도 평가
- 조사방법('22.7.20. 조사자 사전회의 의결에 따름)
 - 전승기량, 교수능력 평가, 면담을 구분하여 조사
 - 조사순서는 당일 현장 추첨
 - 지표별 평가방법
 - '해당종목의 이해도', '전승의지', '건강상태'는 면담을 통해 평가
 - '리더십 및 교수능력'은 조사대상자가 전수생 대상 강습 실연을 통해 평가
 - '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(5점)' 제외

라. 검토의견

-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승교육사 인정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람

마. 의결사항

- 부결함
 - 국가무형문화재 '통영오광대' 전승교육사로서 적격자 없음
- 의결정족사항: 출석 7명, 부결 7명

바. 특기사항

- 없음

2. 국가무형문화재 ‘강강술래’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

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‘강강술래’ 전승교육사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
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국가무형문화재 ‘강강술래’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22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전승교육사 인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국가무형문화재 ‘강강술래’
- 지 정 일 : 1966.2.15.
- 주요 전승자 현황
 - 보유자(4명) : 박용순(‘38년생, 여, 창·선소리, ‘93.8.2. 인정)
 - 김종심(‘46년생, 여, 창·선소리, ‘00.7.22. 인정)
 - 박종숙(‘54년생, 여, 창·기와밟기, ‘00.7.22. 인정)
 - 차용순(‘53년생, 여, 창·받음소리, ‘00.7.22. 인정)

2) 추진경과

- 2022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(‘22.1.25.)
-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추천 요청(‘22.5월, 우리청→보존회)
 -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자 7명 추천(‘22.8월, 보존회→우리청)
- 조사지표 검토 등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(‘22.8.18.)
-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실시(‘22.10.20.)

3) 조사개요

- 일 시 : 2022.10.20.(목), 10:00
- 장 소 : 진도군무형문화재전수관
- 조 사 자 : 관계전문가 3명

- 조사대상자 : 보존회 추천 이수자 7명
- 조사내용 :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의 조사지표(단체종목)에 따른 전승능력, 전승환경, 전수활동 기여도 평가
- 조사방법(“22.8.18. 조사자 사전회의 의결에 따름)
 - 전승기량, 교수능력 평가, 면담을 구분하여 조사
 - 조사순서는 당일 현장 추천
 - 지표별 평가방법
 - ‘해당종목의 이해도’, ‘전승의지’, ‘건강상태’는 면담을 통해 평가
 - ‘리더십 및 교수능력’은 조사대상자가 전수생 대상 강습 실연을 통해 평가
 - ‘전수교육 참여 실적(5점)’, ‘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(5점)’ 제외

라. 검토의견

-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승교육사 인정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람

마. 의결사항

- 부결함
 - 국가무형문화재 ‘강강술래’ 전승교육사로서 적격자 없음
- 의결정족사항: 출석 7명, 부결 7명

바. 특기사항

- 없음

3. 국가무형문화재 ‘남도들노래’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

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‘남도들노래’ 전승교육사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
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국가무형문화재 ‘남도들노래’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22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전승교육사 인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국가무형문화재 ‘남도들노래’
- 지 정 일 : 1973.11.5.
- 주요 전승자 현황
 - 보유자(4명) : 이영자(‘43년생, 여, 가창, ‘01.11.30. 인정)
박동매(‘60년생, 여, 가창, ‘01.11.30. 인정)
 - 전승교육사(1명) : 박재준(‘59년생, 남, 악사, ‘97.8.1. 인정)

2) 추진경과

- 2020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(‘20.1.22.)
-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자 추천 요청 및 제출(‘20.7월. 보존회→우리청) *서류 미흡
-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자 추천 요청(‘21.6월, 우리청→보존회)
- 「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변경 알림(‘22.1월, 우리청→보존회)
- 2022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(‘22.1.25.)
-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추천 요청(‘22.4월, 우리청→보존회)
 -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자 3명 추천(‘22.5월, 보존회→우리청)
- 조사지표 검토 등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(‘22.8.18.)
-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실시(‘22.10.21.)

3) 조사개요

- 일 시 : 2022.10.21.(금), 10:00
- 장 소 : 지산민속놀이전수관
- 조 사 자 : 관계전문가 3명
- 조사대상자 : 보존회 추천 이수자 3명
- 조사내용 :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의 조사지표(단체종목)에 따른 전승능력, 전승환경, 전수활동 기여도 평가
- 조사방법('22.8.18. 조사자 사전회의 의결에 따름)
 - 전승기량, 교수능력 평가, 면담을 구분하여 조사
 - 조사순서는 당일 현장 추첨
 - 지표별 평가방법
 - '해당종목의 이해도', '전승의지', '건강상태'는 면담을 통해 평가
 - '리더십 및 교수능력'은 조사대상자가 전수생 대상 강습 실연을 통해 평가
 - '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(5점)' 제외

라. 검토의견

-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승교육사 인정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람

마. 의결사항

- 부결함
 - 국가무형문화재 '남도들노래' 전승교육사로서 적격자 없음
- 의결정족사항: 출석 7명, 부결 7명

바. 특기사항

- 없음

검 토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‘경기민요’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결과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

보 고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‘대금산조’ 보유자 인정조사 관련 소위원회 결과 보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